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5,669,342	11,870,080
일반회계		381,106,871	11,433,206
특별회계		14,562,471	436,874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4,562,471	436,87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25,961	63,7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65,219	28,95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40,019	46,201
	주차장특별회계	9,020,816	270,6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03,756	9,113
	재정비축진특별회계	598,893	17,967
	기반시설특별회계	7,807	2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354,98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금후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국·시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